

정 관

(현 행)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정신과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가톨릭대학교(성신, 성심, 성의 교정을 둔다)
2. 동성고등학교
3. 계성여자고등학교
4. 동성중학교
5. 계성초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 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국내외의 기부금과 기타 수익 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부속병원의 회계는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 이를 집행하되 따로 정하는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 이월 사용분을 제외하고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법인에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이사 중 1인(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②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 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이사(개방 이사 포함) 및 감사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의 3(개방 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이사 중 개방 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개방 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 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 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 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②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 6(감사 중 1인의 선임) ①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의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절차에 대하여는 제20조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 2(상임이사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기관 및 학교의 장을 겸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 변경 및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기관 또는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의 2(이사회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수익 사업

제31조(수익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부동산 매매업
3. 농업
4. 임업
5. 장의업
6. 서비스업(종합체육시설업)
7. 유통판매업(OA기기, 가구 등)
8. 의료기기, 의료용품 판매업
9. 출판업
10. 장례 관련 상품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11.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12. 건설업, 실내장식(인테리어)
13. 음식점업
14. 사업 지원 서비스업
15.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 경영 컨설팅업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32조(수익 사업체의 명칭) 제31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체를 경영한다.

1. 서울성모장례식장
2. 여의도성모장례식장
3. 의정부성모장례식장
4. 서초평화빌딩사업소
5. (주)평화드림
6. 부천성모장례식장
7. <삭제>
8. 성바오로장례식장
9. (주)평화아름
10. 평화MSC

제33조(수익 사업체의 주소) 제32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성모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3번지
2. 여의도성모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3. 의정부성모장례식장: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번지
4. 서초평화빌딩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5. (주)평화드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6. 부천성모장례식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7. <삭제>
8. 성바오로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2동 620-60
9. (주)평화아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10. 평화MSC: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제34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등)에게 기증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7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한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되, 대학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 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 조건: 교수 시간, 소속 학부(전공)·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 실적·논문 지도·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전임강사: 2년

⑤ 대학 교육기관의 주요 보직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보한다.

⑥ 학교의 조교는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간제 교원)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장은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교원이 정관 제3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5. 퇴직한 교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8조의 2(전형 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 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0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9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9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9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9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3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7조(명예퇴직 수당)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 및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을 따른다.)

③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8조(정년 등)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초등학교장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 제청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장, 학장 및 주요 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수업·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제51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6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 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징계 의결 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직원

제69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0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근속 승진, 대우 직원 선발, 승급, 전보 등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중등교육 실시 학교 소속 일반직 8급 이하 및 기능직 8급 이하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근속 승진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 ⑤ 중등교육 실시 학교 소속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5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 표준 생계비 및 사회 일반 기관의 임금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정년)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의 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 중 퇴직 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사무직원은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 요건, 수당 등 세부 사항은 관할청 지침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74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징계 및 재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 ② 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인

제76조(법인 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 ② 법인사무국에는 국장과 부국장 약간 인을 두며 국장과 부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 ③ 법인사무국에는 대외협력실과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대외협력실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각 부서(팀)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7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교목부총장, 신학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두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 시에는 교학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한다.

제78조(학장·학부장·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학부에 학부장을,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단과대학 학장, 대학원 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각 부학장 및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학장, 학부장, 대학원장 및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신설 대학 학장은 석좌교수로 보할 수 있으며, 관련 학과 전임교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④ 학장, 학부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9조(하부 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학생지원처, 사무처, 입학처를 두되, 성의교정에 설치하는 연구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심교정에 설치한다. 교정별 조직으로 성신교정에 교학처, 사무처를, 성심교정에 취업지원처, 연구행정실을, 성의교정에 교학처, 사무처, 기획실, 대외협력실, 입학관리실을 둔다.

- ② 대학원에 교학처를 두고, 교정별로 교학부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하고, 교무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취업지원처장, 연구행정실장,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및 입학관리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④ 제1항의 실장, 처장 및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 및 부분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 ⑤ 각 교정의 처, 본부, 실, 부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팀)를 두며, 세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5항의 각 부서(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 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제80조(부속 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 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부설 기관) ① 대학교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등 필요한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 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설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설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설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도서관) ① 각 교정별로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에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전산소) ① 각 교정별로 전산소를 두며, 전산소장은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전산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교목실·교육이념실) ① 각 교정별로 교목실을 두며, 교목실장은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② 교목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성심교정에 교육이념실을 둔다.

제85조 <삭제>

제86조(가톨릭중앙의료원) ① 대학교 의료 교육 및 산하 연구 기관과 각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는 의료원장과 의무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의무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제1항에서 정한 각 기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의료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실, 이념구현실, 가톨릭의과학연구원을 둔다.

- ⑤ 기획조정실장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장,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경영관리실장과 이념구현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 ⑥ 제4항의 각 실 및 연구원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팀)를 둔다.
- ⑦ 제6항의 각 부서(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제4항 및 제6항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대학교 부속병원) ①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의 병원을 둔다.

1. 서울성모병원
2. 여의도성모병원
3. 의정부성모병원
4. 부천성모병원
5. 성바오로병원
6. 인천성모병원
7. 성빈센트병원
8. 대전성모병원

② 서울성모병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 밑에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행정부원장, 암병원장, 영성부원장, 대외협력부원장, 간호부원장을 두고 병원장과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암병원장, 대외협력부원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부원장과 영성부원장, 간호부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및 성바오로병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 밑에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행정부원장과 원목실장을 두고 병원장과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부원장과 원목실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및 대전성모병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 밑에 의무원장, 원목실장을 두고 병원장과 원목실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각 병원에는 필요에 따라 병원장 밑에 연구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병원에는 임상 진료 및 진료 지원, 행정관리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제3절 고등학교

제88조(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9조(하부 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중학교

제90조(중학교)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하부 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부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초등학교

제92조(초등학교)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하부 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정원

제94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8과 같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이하 이 장에서 “학교”라 한다)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96조(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① 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 ②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위원 정수의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지역 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⑤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의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위촉한다.
-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선출일 현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 위원은 학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 위원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휴직, 퇴임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 학부모 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101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항은 제외)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13.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제102조(시행 의무)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101조의 각항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중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6조(운영 세칙)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각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대학평의위원회

제107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 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8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 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3인
3. 학생 3인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제109조(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교정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각 1인과 전체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교정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교정 학생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10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1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대표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3조(운영 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114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5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 수 환	1922. 5. 8.	1994. 9. 1~1999. 8. 31	서울 중구 명동 2가 1-8
이 사	김 옥 균	1925. 12. 9.	1994. 9. 1~1999. 8. 31	서울 중구 명동 2가 1-8
이 사	강 우 일	1945. 10. 12.	1994. 9. 1~1999. 8. 31	서울 중구 명동 2가 1-8
이 사	최 창 무	1936. 9. 15.	1994. 9. 1~1999. 8. 31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2
이 사	염 수 정	1943. 12. 5.	1994. 9. 1~1999. 8. 31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2
이 사	장 덕 진	1934. 6. 27.	1994. 9. 1~1997. 2. 28	서울 동작구 상도1동 501-3
이 사	김 찬 진	1941. 2. 24.	1994. 9. 1~1997. 2. 28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7
이 사	박 연 호	1932. 3. 18.	1994. 9. 1~1997. 2. 28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402-13
이 사	곽 성 민	1948. 3. 4.	1994. 9. 1~1997. 2. 28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감 사	최 선 응	1944. 7. 25.	1994. 9. 1~1996. 8. 31	서울 중구 명동 2가 1-8
감 사	유 년 희	1940. 11. 29.	1994. 9. 1~1995. 8. 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아파트 806

제11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 동 법인이 설치 경영하던 다음 각 호에 소속한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소속 기관에 임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정관에 의한다.
 1. 가톨릭대학교
 2.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그 산하의 각 부속병원
 3. 동성고등학교
 4. 동성중학교
 5. 계성여자고등학교
 6. 계성초등학교
 7. 법인 사무국
-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각급 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정관에 의한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동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처리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 1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성심학원이 설치 경영하던 성심여자대학교에 소속한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과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 ③ (교원의 임용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심여자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 소속한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기간은 임용 당시의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정관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정관에 의한다.
- ④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가톨릭대학교와 성심여자대학교의 총장 및 기타 보직자의 임기는 1995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3조 제5호, 제7장 제5절,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92조 별표 8, 부칙 제2항 제6호-'94. 9. 1. 시행)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67조 제3항, 제76조 제4항, 제5항, 제9항)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76조 제7항)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92조 별표 2, 별표 4)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44조 제3항)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75조 제2항, 제3항, 제76조 제1항 내지 제10항, 제77조 제2항, 제3항, 제8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항, 제10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4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79조 제1항)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6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77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1조 제2호 내지 제5호)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84조 제4항 내지 제9항, 제8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은 199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44조 제1항)은 199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9항, 제77조 내지 제93조)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79조 제7항, 제86조 제7항, 제9항, 제8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64조 제3항, 제95조 내지 105조)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31조 내지 제33조)은 200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9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은 200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94조 별표 4)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105조, 제106조)은 200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19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및 제3항, 제77조 제5항 내지 제7항, 제86조 제1항 및 제3항)은 200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76조 제2항, 제79조 2항, 제86조 제4항 내지 제10항, 제87조 제2항)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18조 제1호)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21조의 2)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8조, 제79조 제4항, 제79조 제6항)은 200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7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200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며,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2조, 제33조)은 200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64조 제1항, 제3항, 제76조 제1항, 제2항, 제79조 제1항, 제3항, 별표 1)은 200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2조 제5호, 제33조 제5호, 제37조 제1항, 제48조)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50조 제3항, 제79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1조 제1항)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9조의 2)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1조, 별표 2)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6조 제2항, 제77조 제3항, 제79조 제7항, 제84조 제3항, 제86조 제4항, 내지 제10항, 제87조 제2항 제1호 제2호)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1조 내지 제33조)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제52조, 제58조, 제70조,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3조, 제109조, 별표 8)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1조, 제12조의 2,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0조의 7, 제25조, 제27조, 제29조의 2,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의 2,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9조, 제50조, 제66조, 제85조, 제101조, 제107조 내지 제116조)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 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 이사 또는 감사는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19조)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20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47조, 제76조, 제89조, 제91조, 제93조, 별표 1)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78조, 제79조, 제86조, 별표 2)은 200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5조, 제20조의 4 내지 6, 제25조, 제37조, 제39조, 제76조, 제87조, 제101조, 제112조, 별표 1 내지 별표 8)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37조 제3항 제1호)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40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5조, 제18조, 제21조의 2,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73조의 2, 제87조)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78조 제1항, 제2항)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32조, 제33조, 제86조, 제87조)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제79조 제1항, 제3항)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9조, 제86조)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1조, 제32조, 제33조)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32조, 제33조, 제78조)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별표 5, 별표 6)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86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제7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86조 제5항, 제87조 제2항 내지 제4항, 별표 5 내지 별표 8)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별표 1]

법인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113인
일반직계	107인
2급(참 여)	3인
3급(부참여)	8인
4급(참 사)	20인
5급(부참사)	12인
6급(주 사)	29인
7급(부주사)	7인
8급(서 기)	26인
9급(부서기)	2인
기능직계	6인
6등급	2인
7등급	2인
8등급	인
9등급	인
10등급	2인

[별표 2]

가톨릭대학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468인
일반직계	210인
2급(참 여)	7인
3급(부참여)	18인
4급(참 사)	30인
5급(부참사)	33인
6급(주 사)	46인
7급(부주사)	61인
8급(서 기)	13인
9급(부서기)	2인
기술직계	92인
행정 기술직	68인
3급(사서·부참여)	3인
4급(사서·참 사)	10인
5급(사서·부참사)	10인
6급(사서·주 사)	11인
7급(사서·부주사)	23인
8급(사서·서 기)	7인
9급(사서·부서기)	4인
의료 기술직	21인
4급	9인
5급	7인
6급	2인
7급	2인
8급	1인
일반 기술직	3인
5급	2인
6급	1인
기능직계	118인
6등급	29인
7등급	20인
8등급	22인
9등급	28인
10등급	19인
고용직계	0인

별정직계	48인
5급(부참사)	8인
연구 강사	
6급(주 사)	40인
연구 조교	

[별표 3]

가톨릭중앙의료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59인
일반직계	59인
2급(참 여)	3인
3급(부참여)	3인
4급(참 사)	10인
5급(부참사)	15인
6급(주 사)	13인
7급(부주사)	10인
8급(서 기)	5인

[별표 4]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10,287인
일반직계	4,866인
2급(참 여)	14인
3급(부참여)	46인
4급(참 사)	927인
5급(부참사)	1,391인
6급(주 사)	1,131인
7급(부주사)	921인
8급(서 기)	415인
9급(부서기)	21인
기술직계	1,928인
행정 기술직	36인
5급	22인
6급	11인
7급	3인
의료 기술직	1,131인
4급	274인
5급	273인
6급	208인
7급	190인
8급	186인
일반 기술직	761인
4급	49인
5급	158인
6급	131인
7급	107인
8급	97인
9급	219인
기능직계	2,003인
6등급	774인
7등급	389인
8등급	550인
9등급	234인
10등급	56인
별정직계	1,490인

5급(부참사) 전문의	350인
6급(주 사) 전공의	1,140인

[별표 5]

동성고등학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11인
일반직계	5인
5급(부참사)	1인
6급(주 사)	1인
7급(부주사)	1인
8급(서 기)	1인
9급(부서기)	1인
기능직계	6인
8등급	2인
9등급	4인

[별표 6]

동성중학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7인
일반직계	2인
6급(주 사)	1인
7급(부주사)	1인
기능직계	5인
8등급	1인
9등급	4인

[별표 7]

계성여자고등학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8인
일반직계	3인
5급(부참사)	1인
6급(주 사)	1인
7급(부주사)	1인
기능직계	5인
8등급	1인
9등급	4인

[별표 8]

계성초등학교 사무 조직 정원

총 계	16인
일반직계	6인
5급(부참사)	1인
6급(주 사)	1인
7급(부주사)	1인
8급(서 기)	2인
9급(부서기)	1인
기술직계	1인
6급(사 서)	1인
기능직계	9인
7등급	1인
8등급	2인
9등급	6인